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61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 : 인요한 · 성일종 · 구자근

장동혁 • 권영세 • 박준태

조승환 · 조정훈 · 권영진

최수진 • 우재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.

그런데,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,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.

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,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75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0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배우자 출산휴가"를 "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"로 한다.

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

제77조제1항 후단 중 "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를 "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고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--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 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·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-----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가----전후휴가 급여 등(이하 "출산 전후휴가 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하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 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

액을 지급한다. 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"로 본다.

②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
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
<u>기간 중 최초 10일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77조(준용) ①
유산·사산휴가, 배
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
<u>휴가</u> .
•

② (현행과 같음)